

별표 1

지원금 편성 불가 항목

※ 아래 편성 불가 항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지원사업자에 있음

인정 불가 경비	세부 내역
자산취득성 물품	① 가구 및 전자기기, 악기 및 각종 집기류 등 ※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적발 시 ※ 자산취득성 물품에 해당되는지 미리 협의 필수(자의적 해석 불가) ※ 자산취득성 물품의 기준 - 소모품(조달청 고시 내구연수 기준 내구연한 1년 미만, 취득단가 20만원 미만)이 아닌 물품 - 관련근거 「물품관리법」 제19조, 조달청 고시 「물품분류지침」 제2조
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·기관의 운영경비	①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② 프로그램 공간이 아닌 운영사무실 임대료, 시설비, 수선비 등 ③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, 공과금, 통신비(전화요금 등) 등
과도한 다과비 책정	① 참여자 수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② 사업 참여 구성원 외 다른 인력의 다과비까지 지출한 경우 ③ 다과비 책정한도 이상을 지출한 경우 ④ 식비 책정한도 이상을 지출한 경우 ※ 일시, 장소, 참여자 명단, 참여 인원, 내용, 사진 등 제출 必
주류 및 유흥성 지출	① 주류 구입 불가, 유흥성 업소 집행 불가
참여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사업비 집행	① 사업 참여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(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)에 모든 사업비 집행 불가(추후 발견 시 전액 환수 조치)
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	① 상금, 상금 심사비 등
기타사항	① 행사기념품, 경품(상품권, 기프티콘 등)구입, 유류비 지출 ②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 ③ 지원금(보조금)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④ 기자재 중 프로그램 외 용도가 더 큰 기자재 임차 시 사전에 경기아트센터와 협의 必

별표 2

예산 편성 지침

- ※ 아래 지침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지원사업자에게 있음
- ※ 선정 후 지원금액에 따라 세부 예산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며, 자부담 예산으로 선 지출한 비용은 지원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

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

- 사업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(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)에 모든 사업비 집행 불가(발견 시 전액 환수 조치)
예) A단체장(혹은 참여 강사)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문구사에서 교육 재료 구입(X)
- 운영비 ※ 아래 항목만 편성 가능
 - 소모품비 : 교육 운영 및 발표회 진행 관련 물품 구입
 - 악기 유지관리비 : 보유 및 임차 악기에 대한 수리비 및 부속품 교체 비용 등
 - 다과비 : 1인당 5천원(최대 2회 편성) ※ 실 교육인원 기준 편성하며, 최대 인원은 20명까지 가능
 - 임차료(대관료) : 교육 운영 및 발표회 진행 관련 장비 및 공간 임차 비용 등
- 현실 물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편성·집행하되, 지원금 규모를 고려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
- 자산 취득성 물품 구입 불가(필요 시 임차로 진행)
- 현금 지출 및 간이영수증 불가
- 반드시 별도의 독립된 통장으로 운용하며 계좌이체 혹은 체크카드를 사용

지원신청금 편성 기준

※ 운영비는 장르 및 인원별 차등 지급(아래 참조)

장르		지원내용	산 출	지원금액
기 악	악기미보유	① 악기 운영비 ② 유지관리비 등	① 악기 150,000원×10개=1,500천원	2,000,000원
	악기보유		② 소모품·유지관리비 50,000원×10개=500천원	
성악		교육운영경비	① 10명 미만	400,000원
			② 10명 이상 ~ 15명 이하	600,000원
			③ 16명 이상 ~ 20명 이하	800,000원
연극, 무용			④ 20명 초과	1,000,000원